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채용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인자에 과태료 부과 〉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2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채용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인자에 과태료 부과	2

I. 제안경위

2025년 2월 10일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할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채용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인자에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0조를 위반하여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까지-----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¹⁾

1)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그러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이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채용여부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구직자의 고용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다른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인자가 채용여부를 미고지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행정청 지도·점검 시 기업에 채용여부를 고지하도록 시정명령하여 자율시정의 기회를 주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구직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부담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539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